

# 감정평가서

## APPRAISAL REPORT

건명: 배희녀 소유물건  
(2024타경4086)

의뢰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법보좌관 김광택

감정평가서번호: D042407-2-022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全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동인감정평가법인(주) 경남지사

## (토지, 건물) 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손정이

동인감정평가법인(주) 경남지사 지사장 손정이 (서명또는인)

감정평가액	이억사백삼십사만이천육십원정 (₩204,342,060.-)					
의뢰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법보좌관 김광택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경매4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배희녀 (2024타경4086)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4.07.24	2024.07.24	2024.07.24	
감정 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1,483	토지	1,483	-	159,506,000
	건물	103.37	건물	71.63	480,000	34,382,400
	제시외 건물	(64.2)	제시외 건물	64.2	-	10,453,660
합계					₩204,342,060	
심사 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인) 김철태					

# 토지, 건물 감정평가명세표

기호(1~5, ㄱ~ㄴ)

페이지: 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울도리	700-3	전	보전관리지역	600	600	69,000	41,400,000	
2	"	산153-7	임야	보전관리지역	443	443	62,000	27,466,000	현황 : 휴경전 상태
3	"	722	대	계획관리지역	440	440	206,000	90,640,000	현황 : 일부 도로 감안
4	"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996번길 17-24	722 위 지상	주택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71.63	71.63	480,000	34,382,400	1,350,000 x 16/45
5	"	722 위 지상	단독주택 (2동호)	블록구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31.74	-	-	-	현황 : 소재불명
<b>소 계</b>								<b>₩193,888,400</b>	

# 토지, 건물 감정평가명세표

기호(1~5, ㄱ~ㄹ)

페이지: 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ㄱ	(제시외건물)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율도리	722 지상	방 및 창고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32.8)	32.8	266,000	8,724,800	750,000 x 16/45 미등재 관찰감가
ㄴ	"	722 지상	창고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4.6)	4.6	40,000	184,000	120,000 x 10/30 미등재 관찰감가
ㄷ	"	722 지상	창고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12.2)	12.2	85,700	1,045,540	300,000 x 10/35 미등재 관찰감가
ㄹ	"	722 지상	창고	철파이프조 강판지붕 단층	(14.6)	14.6	34,200	499,320	120,000 x 10/35 미등재 관찰감가
<b>소 계 합 계</b>								<b>₩10,453,660</b> <b>₩204,342,060.-</b>	
				이	하	여	백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1. 감정평가 개요

###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울도리에 소재하는 부동산(토지, 건물)으로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의뢰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 건입니다.

### 2.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 가. 기준가치

본건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 나. 감정평가조건

없습니다.

### 3. 감정평가의 근거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습니다.

### 4. 기준시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 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자인 2024.07.24 일로 하였습니다.

### 5. 실지조사 실시기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위한 실지조사는 2024.07.24 일에 시행하여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조사하고 가격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습니다.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6. 감정평가방법

### 가. 감정평가방식 및 평가방법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 결정은 아래의 감정평가방식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 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 결정함이 원칙입니다.

#### 1) 감정평가방식

- ① 원가방식 :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② 비교방식 :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감정평가방식
- ③ 수익방식 :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2) 감정평가방법

- ①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하며, ‘적산가액’이란 원가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합니다.
- ②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의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하며, ‘비준가액’이란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합니다.
- ③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합니다.
- ④ ‘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합니다.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나.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 (1) 토지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인근지역 내 최근 매매사례 중 대상과 비교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선정하여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통해 합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 (2) 건물의 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대상건물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대상물건의 특성상 다른 평가방법은 적용이 곤란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시산가액 비교 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 7. 기타 참고사항

- 가. 기호(2) 토지의 의뢰목록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휴경전 상태로서, 이를 고려하여 해당 토지를 평가하였습니다.
- 나. 기호(3) 토지 일부는 도로로 이용중인바, 이를 감안하여 해당 토지를 평가하였습니다.
- 다. 기호(5) 건물은 현황 '소재불명' 인바,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라. 기호(ㄱ~ㄴ) 제시외건물은 실측사정하여 평가하였으니, 대상에 포함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 기호(1,2) 토지는 휴경전 상태로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잡풀 등으로 인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 등이 소재할 가능성이 있으니, 경매 응찰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기호(1~3) 토지는 인접 토지와 지적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 상태로서, 정확한 위치, 경계 등의 확인은 측량을 요합니다.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I.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 i. 토지가격 산출

#### 1. 대상 토지의 개요

기호	소재지 (남해군 창선면)	지목	면적 (㎡)	용도지역	이용 상황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개별공시지가 (2024년, 원/㎡)
1	율도리 700-3	전	600	보전관리	전	세로 (불)	부정형 완경사	14,300
2	율도리 산153-7	임야	443	보전관리	전	세로 (불)	부정형 완경사	1,500
3	율도리 722	대	440	계획관리	단독 주택	세로 (가)	부정형 완경사	62,800

#### 2. 공시지가기준법

##### 가. 공시지가기준법의 적용

본건 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평가하되, 본건 토지와 용도지역·이용 상황·주변 환경 등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선정하여 공시기준일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 변동을 및 선정된 공시지가 표준지와 본건 토지와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주는 지역요인, 개별 요인을 비교·분석하고 시세 및 그 밖의 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평가하였습니다.

##### 나.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의 선정 및 사유

비교표준지의 선정은 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로서, 당해 인접 시·군·구안의 인근지역에 위치 하고 실제 지목 및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하며, 용도지역, 지구·구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과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근접하여 있는 아래의 표준지를 비교 표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024.01.01.기준)

기호	소재지 (남해군 창선면)	지목	면적 (㎡)	용도 지역	이용 상황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비 고
A	율도리 850-2	답	3,316	보전 관리	전	세로 (불)	부정형 완경사	14,300	기호(1,2) 토지와 비교
B	율도리 741	대	550	계획 관리	단독 주택	세로 (가)	사다리 평 지	74,600	기호(3) 토지와 비교

※ 기호(B) 비교표준지는 하천구역에 저촉(3%) 되는바, 개별요인 비교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 다. 시점수정

국토교통부 고시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되, 2024년 07월 이후 지가변동률이 고시되지 않아 전월 지가변동률을 연장 사정하였습니다.

- 경상남도 남해군 (24.01.01~24.07.24 ) (보전관리)

2024.01.01 ~ 2024.06.30 : 0.617

2024.06.01 ~ 2024.06.30 : 0.090

$(1 + 0.00617) * (1 + 0.00090 * 24/30) \approx 1.00689$

- 경상남도 남해군 (24.01.01~24.07.24 ) (계획관리)

2024.01.01 ~ 2024.06.30 : 0.934

2024.06.01 ~ 2024.06.30 : 0.135

$(1 + 0.00934) * (1 + 0.00135 * 24/30) \approx 1.01043$

## 라.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은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일반적 지가수준을 형성하는 요인으로서, 평가대상 토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합니다.(1.000)

## 마. 개별요인 비교

### 1) 개별요인 비교항목

평가대상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을 이용상황별로 다음과 같이 각 조건별로 비교하여 개별요인비교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주택지대 -

조건	항목	세항목
가로조건	가로의 구조 및 상태	폭, 보도
		포장
		계통 및 연속성
접근조건	인근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 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교통의 접근성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대중교통의 유형과 노선
	공공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조건	자연환경	일조, 통풍 등
		조망, 경관 등
		지반, 지질 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기반시설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정보통신기반시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지조건	규모, 형상 등	면적
		접면 너비 및 깊이
		형상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등)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등
토지이용상황	토지이용상황 등	
토양오염	토양오염 상태 및 정화비용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기타규제 (입체이용제한 등)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농경지대 -

조건	항목	세항목
가로조건	접근도로의 상태	접근도로의 배치, 폭, 구조 등
	농로의 상태	농로의 폭, 포장 등
접근조건	교통의 편의성	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접근성
		출하지와의 접근성
환경조건	자연환경	토양, 토질의 양부
		일조, 통풍 등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획지조건	규모, 형상 등	면적
		형상
	고저 등	고저 (경사지 등)
		경사의 방향
	경작의 장애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토지이용상황	토지이용상황 등
토양오염	토양오염 상태 및 정화비용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2) 개별요인 비교

기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비준율
본건	비교 표준지							
1	A	0.98	1.00	1.00	1.00	1.00	1.00	0.980
2	A	0.98	1.00	1.00	1.00	0.90	1.00	0.882
3	B	0.97	1.00	1.05	1.05	1.01	0.95	1.026

\* 본건(1,2)와 비교표준지(A) 비교시

: 본건(1)은 가로조건(농로의 상태 등)에서 열세합니다.

: 본건(2)는 가로조건(농로의 상태 등), 행정적조건(지목 등)에서 열세합니다

\* 본건(3)과 비교표준지(B) 비교시

: 본건은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 기타조건(본건 일부 도로 등)에서 열세하나, 환경조건(자연환경 등), 획지조건(형상 등), 행정적조건(행정상의 규제정도 등)에서 우세하여, 전체적인 개별요인은 본건이 우세합니다.

## 바. 그 밖의 요인(기타요인)의 보정

### 1) 필요성 및 근거

그 밖의 요인 보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및 제14조 제2항 제5호, 대법원판례 ‘2006두11507(2007.07.12선고)’, ‘2003다38207(2004.05.14선고)’, ‘2002두5054(2003.07.25선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1999. 06.21 토관58342-471, 1999.05.20 기획 0100-725, 1991.12.28 건설부 토정30241-36538) 등에서 그 밖의 요인(기타요인)의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공시지가는 현실지가와 차이를 내포할 수 있으므로 인근의 평가 사례, 지가 수준 및 지가동향 등을 기초로 그 밖의 요인(기타요인)의 보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2) 인근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호	소재지 (남해군 창선면)	토지	평가목적 또는 거래사례	용도지역	평가가격 또는 거래가격 (원/㎡)	기준시점 또는 거래시점	비 고
		건물					
①	율도리 310	전	담보 평가	보전관리	65,000	2020.11.25	-
		-					
②	율도리 503-1	대	법원경매 평가	계획관리	240,000	2022.09.14	조경시설 포함 단가
		-					
a	대백리 941-6	임야	거래사례	보전관리	60,240	2022.12.12	-
		-					
b	서대리 678-1	대	거래사례	계획관리	215,384	2022.04.09	-
		-					

## 3) 그 밖의 요인(기타요인) 보정치 산정

### (1) 평가사례 등의 선정기준

인근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서, 용도지역의 동일성과 제반 개별요인의 유사성을 고려하며, 인근 지역 내 다른 평가 사례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의 여부와 적절한 시가를 반영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표준적인 사례를 그 밖의 요인(기타요인)의 보정치 산정을 위하여 활용 하였습니다.

### (2) 보정치 산정

$$\frac{\text{사례 기준 공시지가}(\text{사례평가가격}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비교} \times \text{개별요인비교})}{\text{가격시점(기준시점)일 현재 공시지가}(\text{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 \text{기타요인보정치}$$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비교표준지(A)의 그 밖의 요인(기타요인) 보정치 산정

구분	소재지 (남해군 창선면)	기준단가 (원/㎡)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격차율
사례기준 공시지가	울도리 310	65,000	1.05885	1.000	1.029	70,821	≒ <b>4.918</b>
시점일 현재 공시지가	울도리 850-2	14,300	1.00689	--	--	14,399	
비교요인	시점수정	남해군 보전관리지역(2020.11.25~2024.07.24)					1.05885
	지역요인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합니다.					1.000
	개별요인	표준지는 사례 대비 개별적 제 요인에서 우세합니다.					1.029

※ 평가사례(①) 기준 비교표준지(A) 개별요인 산출내역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누 계
0.98	1.00	1.05	1.00	1.00	1.00	1.029
비교표준지는 사례와 대비시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에서 열세하나, 환경조건(일조, 통풍 등)에서 우세하여, 전체적인 개별요인은 비교표준지가 우세합니다.						

\* 비교표준지(B)의 그 밖의 요인(기타요인) 보정치 산정

구분	소재지 (남해군 창선면)	기준단가 (원/㎡)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격차율
사례기준 공시지가	울도리 503-1	240,000	1.02706	1.000	0.819	201,879	≒ <b>2.678</b>
시점일 현재 공시지가	울도리 741	74,600	1.01043	--	--	75,378	
비교요인	시점수정	남해군 계획관리지역(2022.09.14~2024.07.24)					1.02706
	지역요인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합니다.					1.000
	개별요인	표준지는 사례 대비 개별적 제 요인에서 열세합니다.					0.819

※ 평가사례(②) 기준 비교표준지(B) 개별요인 산출내역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누 계
0.95	1.00	0.95	0.90	1.04	0.97	0.819
비교표준지는 사례와 대비시 행정적조건(행정상의 규제정도 등)에서 우세하나,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 환경조건(자연 환경 등), 획지조건(형상 등), 기타조건(사례 정원수 포함 등)에서 열세하여, 전체적인 개별요인은 비교표준지가 열세합니다.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4)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수준

구분	주위환경	도로조건	지가수준(원/㎡)	비교
단독주택	기존 주택지대	세로 (가)	210,000 ~ 240,000 내외	
농경지	마을주변 농경지대	세로 (불)	70,000 ~ 80,000 내외	

## 5) 그 밖의 요인(기타요인) 보정치 결정

상기와 같이 격차가 있는바, 표준지 공시지가와 인근 지가와와의 격차, 기 시행된 평가 수준 및 최근의 지가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을 상기 격차율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정하였습니다.

비교표준지	그 밖의 요인 보정치
A	4.91
B	2.67

## 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의 결정

기호	표준지 공시지가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14,300	1.00689	1.000	0.980	4.91	69,283	69,000
2	14,300	1.00689	1.000	0.882	4.91	62,355	62,000
3	74,600	1.01043	1.000	1.026	2.67	206,492	206,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3. 거래사례비교법

### 가. 실거래가에 의한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

본건 토지의 가격은 대상 토지와 인근지역에 있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거래시점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을,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기타 가치형성요인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하였습니다.

### 나. 거래사례 선정

#### 1) 인근 거래사례 현황

기호	소재지 (남해군 창선면)	토지	목적	용도지역	거래가격 (원/㎡)	거래시점	비 고
		건물					
a	대벽리 941-6	임야	거래사례	보전관리	60,240	2022.12.12	기호(1,2) 토지와 비교
		-					
b	서대리 678-1	대	거래사례	계획관리	215,384	2022.04.09	기호(3) 토지와 비교
		-					

#### 2) 비교 거래사례 선정 및 사유

대상 토지의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 및 지목, 실제 이용 상황 등이 같거나 유사한 사례로서, 본건의 적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호(a,b)**를 비교 거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 다.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선정된 사례는 현장 조사 시 인근 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라. 시점수정

국토교통부 고시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되, 2024년 07월 이후 지가변동률이 고시되지 않아 전월 지가변동률을 연장 사정하였습니다.

- 기호(1,2) 토지와 기호(a) 거래사례 비교시

경상남도 남해군 (22.12.12~24.07.24 ) (보전관리)

2022.12.01 ~ 2022.12.31 : 0.075

2023.01.01 ~ 2023.12.31 : 0.481

2024.01.01 ~ 2024.06.30 : 0.617

2024.06.01 ~ 2024.06.30 : 0.090

$( 1 + 0.00075 * 20/31 ) * ( 1 + 0.00481 ) * ( 1 + 0.00617 ) * ( 1 + 0.00090 * 24/30 )$

$\approx 1.01223$

- 기호(3) 토지와 기호(b) 거래사례 비교시

경상남도 남해군 (22.04.09~24.07.24 ) (계획관리)

2022.04.01 ~ 2022.04.30 : 0.366

2022.05.01 ~ 2022.05.31 : 0.348

2022.06.01 ~ 2022.06.30 : 0.335

2022.07.01 ~ 2022.07.31 : 0.349

2022.08.01 ~ 2022.08.31 : 0.327

2022.09.01 ~ 2022.09.30 : 0.297

2022.10.01 ~ 2022.10.31 : 0.234

2022.11.01 ~ 2022.11.30 : 0.163

2022.12.01 ~ 2022.12.31 : 0.093

2023.01.01 ~ 2023.12.31 : 0.979

2024.01.01 ~ 2024.06.30 : 0.934

2024.06.01 ~ 2024.06.30 : 0.135

$( 1 + 0.00366 * 22/30 ) * ( 1 + 0.00348 ) * ( 1 + 0.00335 ) * ( 1 + 0.00349 ) * ( 1 + 0.00327 ) * ( 1 + 0.00297 ) * ( 1 + 0.00234 ) * ( 1 + 0.00163 ) * ( 1 + 0.00093 ) * ( 1 + 0.00979 ) * ( 1 + 0.00934 ) * ( 1 + 0.00135 * 24/30 ) \approx 1.04522$

## 마.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은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일반적 지가수준을 형성하는 요인으로서, 평가대상 토지와 비교거래사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합니다. (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바. 개별요인 비교

### 1) 개별요인 비교항목

평가대상 토지와 비교거래사례의 개별요인을 이용상황별로 다음과 같이 각 조건별로 비교하여 개별요인비교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주택지대 -

조건	항목	세항목
가로조건	가로의 구조 및 상태	폭, 보도
		포장
		계통 및 연속성
접근조건	인근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 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교통의 접근성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대중교통의 유형과 노선
	공공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조건	자연환경	일조, 통풍 등
		조망, 경관 등
		지반, 지질 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기반시설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정보통신기반시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지조건	규모, 형상 등	면적
		접면 너비 및 깊이
		형상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등)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등
토지이용상황	토지이용상황 등	
토양오염	토양오염 상태 및 정화비용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기타규제 (입체이용제한 등)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농경지대 -

조건	항목	세항목
가로조건	접근도로의 상태	접근도로의 배치, 폭, 구조 등
	농로의 상태	농로의 폭, 포장 등
접근조건	교통의 편의성	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접근성
		출하지와의 접근성
환경조건	자연환경	토양, 토질의 양부
		일조, 통풍 등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획지조건	규모, 형상 등	면적
		형상
	고저 등	고저 (경사지 등)
		경사의 방향
	경작의 장애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토지이용상황	토지이용상황 등
토양오염	토양오염 상태 및 정화비용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2) 개별요인 비교

기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비준율
본건	비교 거래사례							
1	a	0.96	1.00	1.00	1.00	1.10	1.00	1.056
2	a	0.96	1.00	1.00	1.00	1.00	1.00	0.960
3	b	0.97	1.00	1.05	0.95	1.00	0.95	0.919

\* 본건(1,2)와 비교거래사례(a) 비교시

: 본건(1)은 가로조건(농로의 상태 등)에서 열세하나, 행정적조건(지목 등)에서 우세하여, 전체적인 개별요인은 본건이 우세합니다.

: 본건(2)는 가로조건(농로의 상태 등)에서 열세합니다.

\* 본건(3)과 비교거래사례(b) 비교시

: 본건은 환경조건(자연환경 등)에서 우세하나,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 획지조건(접면도로 상태 등), 기타조건(본건 일부 도로 등)에서 열세하여, 전체적인 개별요인은 본건이 열세합니다.

## 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의 결정

기호	거래사례 토지단가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60,240	1.00	1.01223	1.000	1.056	64,391	64,000
2	60,240	1.00	1.01223	1.000	0.960	58,538	59,000
3	215,384	1.00	1.04522	1.000	0.919	206,889	207,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4. 토지단가 결정

### 가. 산정된 시산가액(단가)

기호	공시지가기준법 (원/㎡)	거래사례비교법 (원/㎡)	비고
1	69,000	64,000	-
2	62,000	59,000	-
3	206,000	207,000	-

### 나. 검토 및 토지가격 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단가)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단가)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이 인정되는 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단가로 결정하였습니다.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i. 건물가격 산출

### 1. 원가법의 적용

건물은 구조, 사용자재, 시공상태, 마감재상태, 부대설비,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해당 재조달원가를 산정하고, 감가수정은 내용년수를 표준으로 한 정액법과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한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2. 대상 건물의 개요

기호	구조	면적(㎡)	용도	사용승인일
4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71.63	주택	1994. 12. 01

※제시외건물은 별지 ‘토지, 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참조 바랍니다.

### 3. 재조달원가의 결정

#### 가. 적용 표준단가 결정

##### 1) 건물신축단가표 및 건축물 재조달원가 자료집상 표준단가

구분	분류 번호	용도	구조	급수	표준단가 (원/㎡)	내용 년수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 (2023년)	1-1- 2-5	일반주택	조적조(시멘트벽돌) 슬래브지붕	4	1,497,000	45 (40~50)
한국부동산 연구원 건축물 재조달원가 자료집(2023년)	01-01- 03-09	일반주택	치장벽돌조 /평지붕	3	1,499,000	45 (40~5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2) 적용 표준단가의 결정

기호	구분	용도	구조	적용 표준단가 (원/㎡)
4	1층	주택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1,350,000

## 나. 부대설비 보정단가 결정

기호	구분	설비내역	보정단가(원/㎡)
4	1층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	적용 표준 단가에 포함

## 다. 재조달원가 결정

기호	구분	용도	구조	적용 표준단가 (원/㎡)	보정단가 (원/㎡)	재조달원가 (원/㎡)
4	1층	주택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1,350,000	적용 표준 단가에 포함	1,350,000

※ 제시외건물은 별지 '토지, 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참조 바랍니다.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4. 건물 적용단가의 결정

기호	구분	재조달원가 (원/㎡)	내용 년수	경과 년수	잔존 년수	감가수정	산출단가	적용단가 (원/㎡)
4	1층	1,350,000	45	29	16	16 / 45	480,000	480,000

※ 감가수정 = 잔존년수 / 내용년수

※ 제시외건물은 별지 ‘토지, 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참조 바랍니다.

## III. 감정평가액 결정

### 1. 감정평가액

구분	사정면적(㎡)	적용단가(원/㎡)	감정평가액(원)	비고
토지	1,483	-	159,506,000	
건물	71.63	480,000	34,382,400	
제시외 건물	64.2	-	10,453,660	
합계			204,342,060	

### 2. 결정의견

상기의 평가전례 및 거래사례, 인근지역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과 원가법에 의한 건물가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기호(1~3)

Page : 1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울도리 소재 고순마을회관 남동측 인근(기호1,2) 및 북동측 인근(기호3)에 각각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 (2) 교통상황

기호(1,2) 농기계 등 접근 가능하고, 지역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기호(3) 소형 차량 등 접근 가능하고, 지역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완경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휴경전 상태입니다.  
기호(2) 완경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휴경전 상태입니다.  
기호(3) 완경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2)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2m내외의 포장농로에 접합니다.  
기호(3) 본건 토지 북서측 일부를 폭 약 3m내외의 포장도로로 이용중입니다.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준보전산지, 영농여건불리농지에 속합니다.  
기호(3)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에 속합니다.

#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

기호(2) 토지의 의뢰목록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휴경전 상태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가)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나) 기 타: 별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참조 바랍니다.

#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기호(4,5,ㄱ~ㄹ)

- |              |             |                        |
|--------------|-------------|------------------------|
| (1) 건물의 구조   | (2) 이용상태    | (3) 설비내역               |
| (4) 부합물 및 종물 |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건물의 구조

기호(4)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벽돌 치장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 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 목재 이중창호 등.

기호(5) 현황 '소재불명' 입니다.  
 기호(ㄱ)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입니다.  
 기호(ㄴ)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입니다.  
 기호(ㄷ)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입니다.  
 기호(ㄹ) 철파이프조 강판지붕 단층입니다.

## (2) 이용상태

기호(4) 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5) 현황 '소재불명' 입니다.  
 기호(ㄱ) 방 및 창고 입니다.  
 기호(ㄴ) 창고입니다.  
 기호(ㄷ) 창고입니다.  
 기호(ㄹ) 창고입니다.

## (3) 설비내역

기호(4)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 되어있습니다.

## (4) 부합물 및 종물

기호(ㄱ~ㄹ) 구조, 규모, 이용상황 등을 고려컨대 종물 및 부합물의 성질로 판단됩니다.

#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기호(4,5,ㄱ~ㄴ)

Page : 2

(1) 건물의 구조  
(4) 부합물 및 종물

(2) 이용상태  
(5) 공부와의 차이

(3) 설비내역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5) 공부와의 차이

기호(5) 건물은 현황 '소재불명' 입니다.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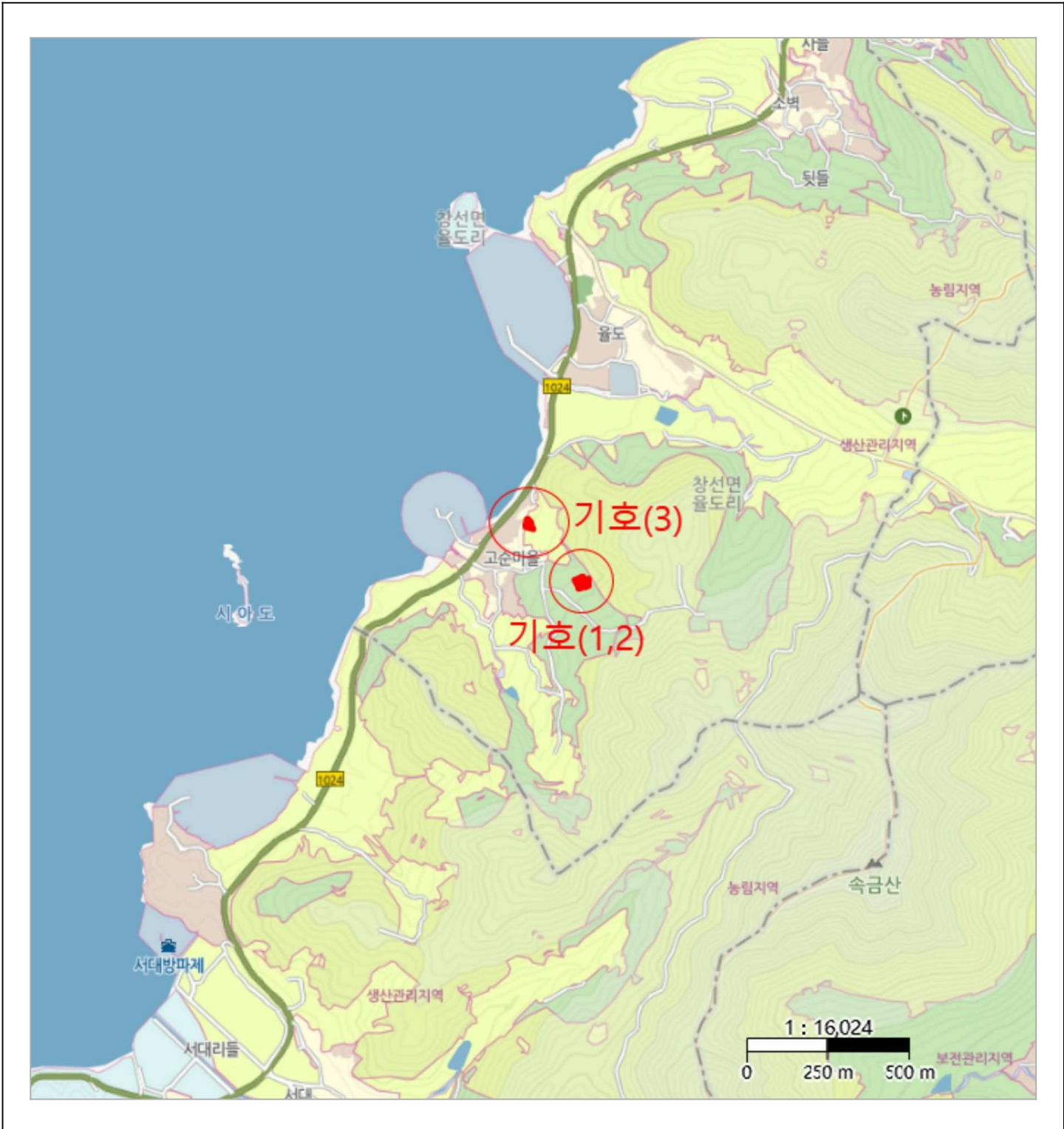
(가)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나) 기 타: 별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참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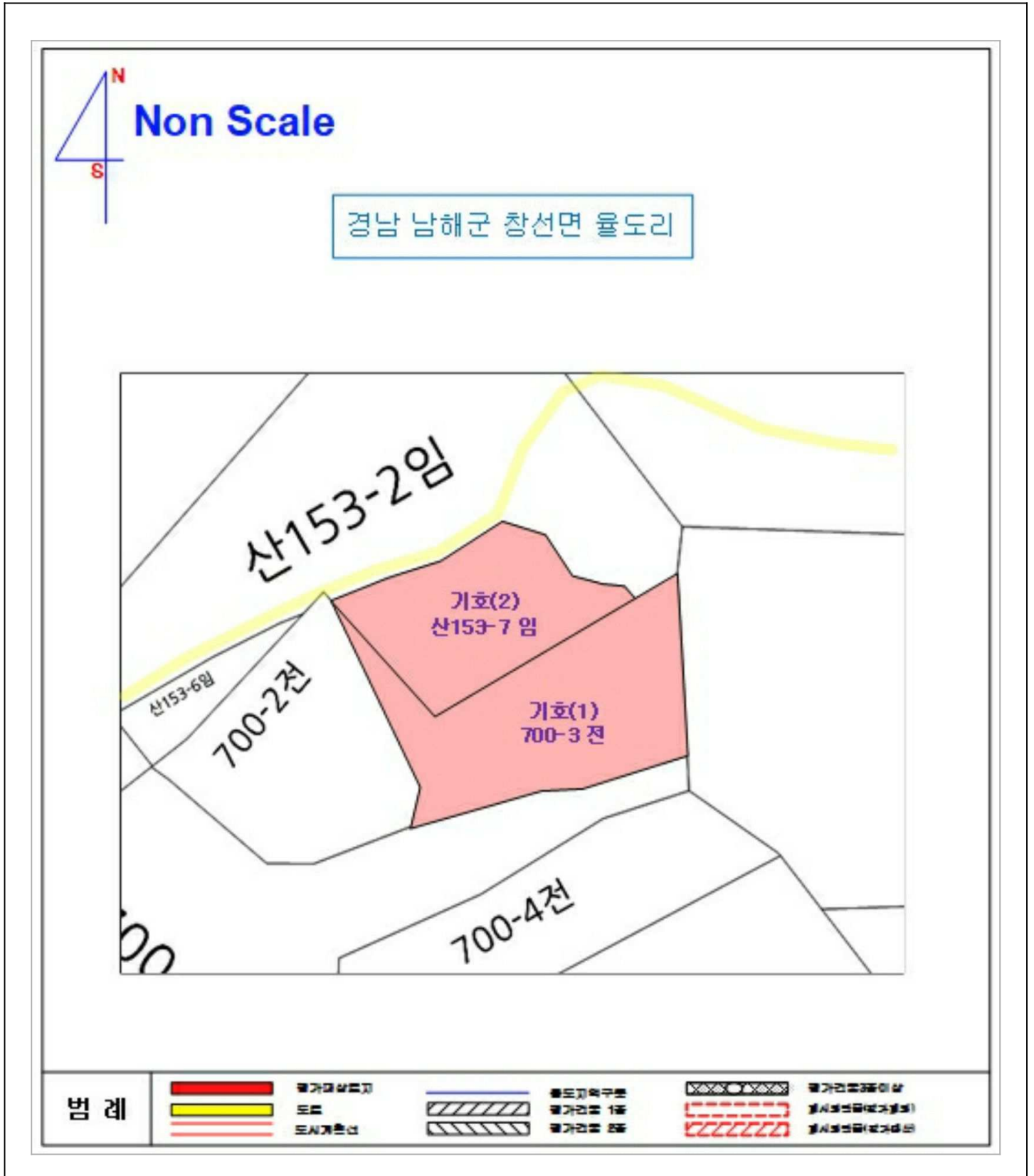
#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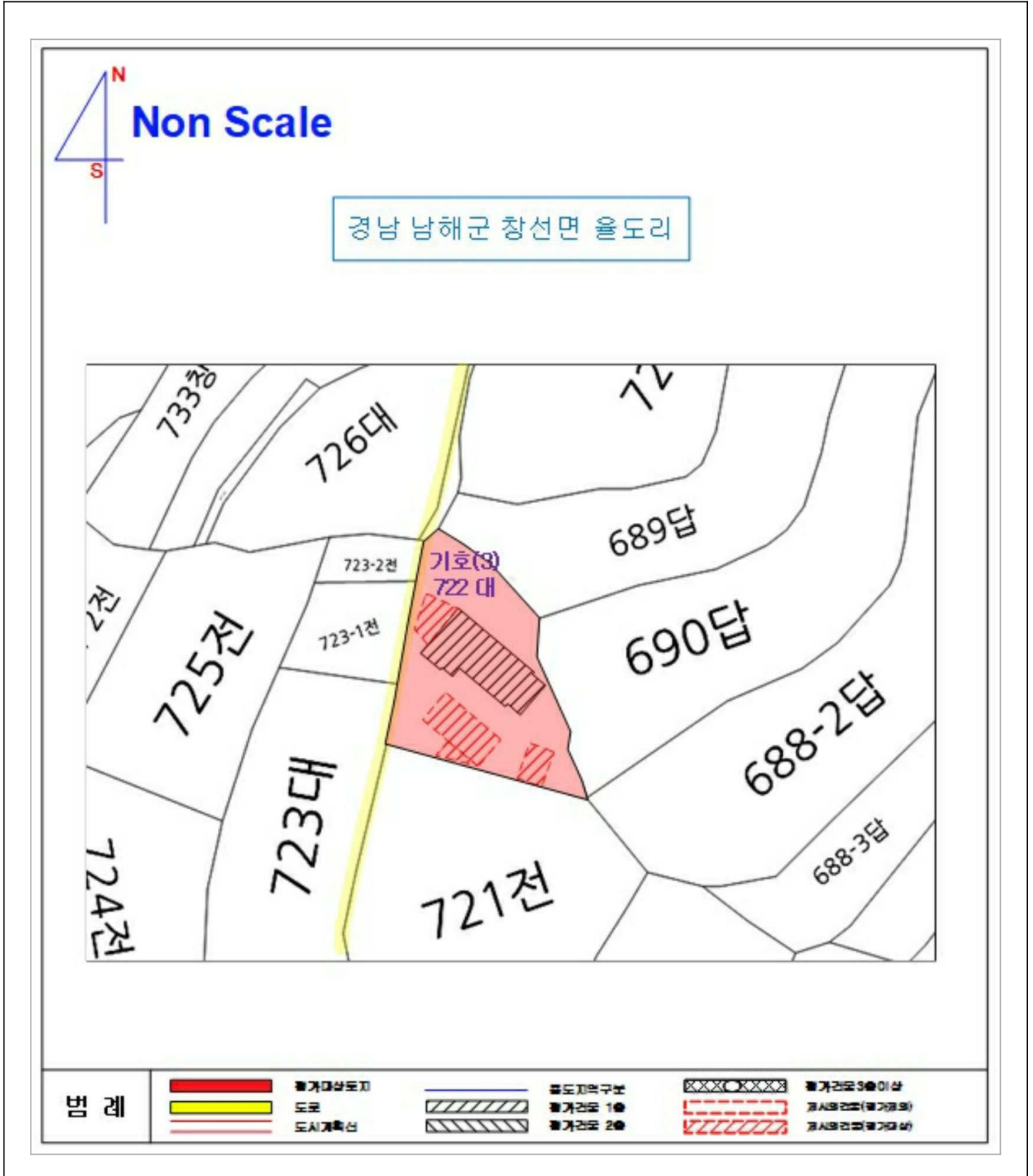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울도리 700-3번지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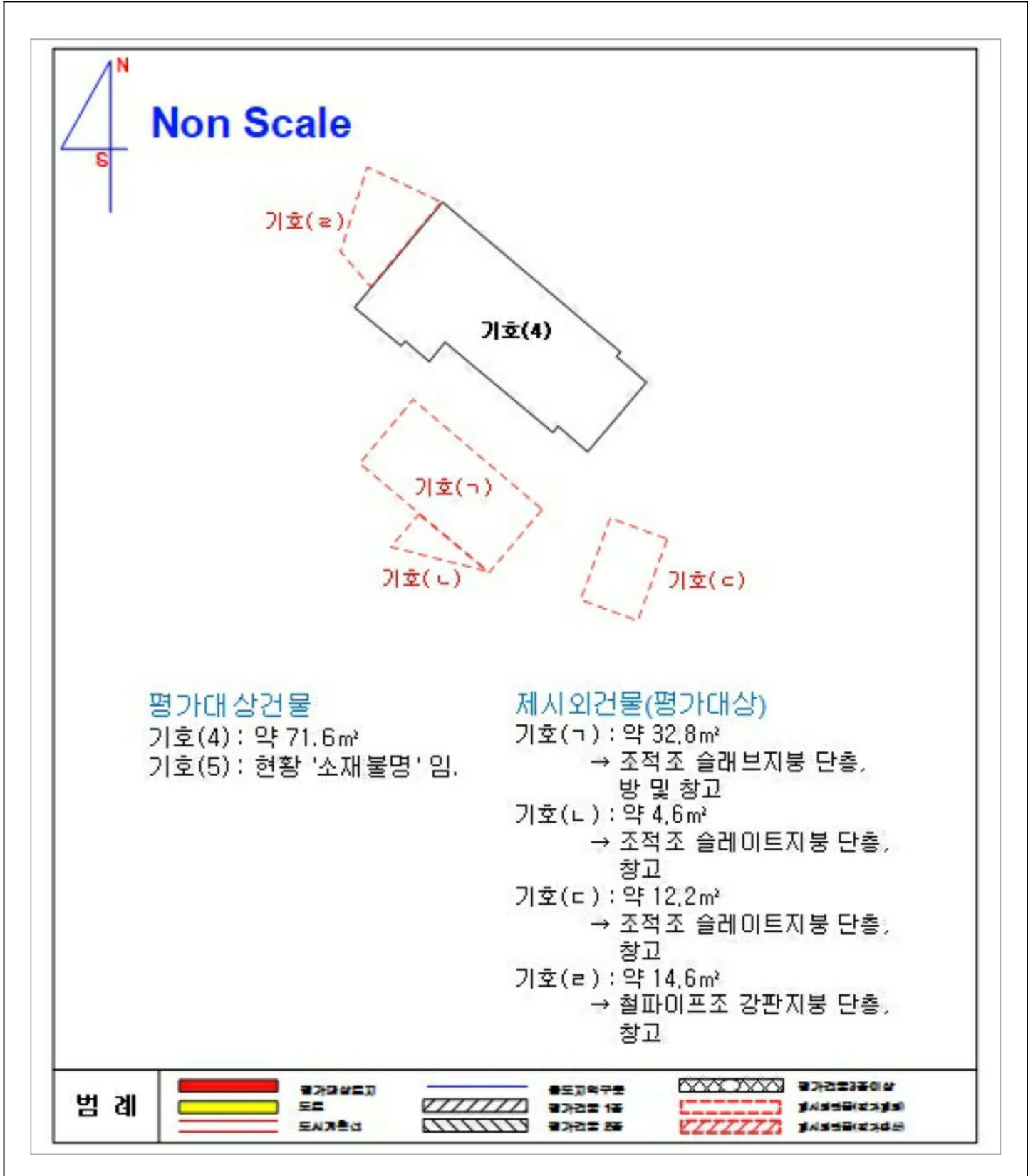
# 지적개황도



# 지적 및 건물 개황도



# 건물개황도





(1, 2)



(1, 2)



(3, 4)



(3, 4)



(4)



( )



( )



( )



( )



(1)